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51

발의연월일: 2021. 9. 30.

발 의 자:최인호·송옥주·박상혁

위성곤 • 이학영 • 이용호

이원택 · 김병욱 · 전혜숙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이하 "협약"이라함)'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이 허용되고, 현존선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임.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러한 협약의 개정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부의 신설 등(안 제30조의2, 제112조 및 제132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기록부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를 규정함.

나.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도입(안 제2조, 제41조의2,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6조, 제58조, 제112조 및 제132조)

협약이 새로 도입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정의, 해당 지수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수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

다. 배출규제해역 제도 정비(안 제43조 및 제44조의2)

협약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동일하므로 기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정의를 '배출규제해역'으로 변경하면서, 배출규제해역 진·출입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위치·일시등에 대해 기관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법률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을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으로,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로 하고, 같은조 제22호 중 "1톤"을 "신규 선박의 건조단계에서 해당 선박이 1톤"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사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새로이 건조한선박의 에너지효율"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해당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존하는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해당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사후적

으로 계산한 것으로 연간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 항은 각 호의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기록 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한 전자기 록부 적합선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여 야 한다.
 - ③ 전자기록부의 기재사항, 적합선언서 발급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 율설계지수 값 및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제1항 중 "운항거리"를 "운항거리,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박에"를 "선박에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1조의5 및 제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 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 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1항

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선박의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제41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3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배

출규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선박의 소유자는 제115조제1항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배출 규제해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41조의3제1항"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해당 선박은 제5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

이 정지된다.

제5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 조의6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2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제1 호의5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선언서의 발급
-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값 및 허용값 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 제132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부 적합선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13.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 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되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 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해 사기구 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채택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6에서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정한 날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u>"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u>	14.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
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	<u> </u>
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	
하기 위하여 <u>선박으로부터의</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u>황산화물</u> 배출을 특별히 규제	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	물질의
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	
역을 말한다.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22
란 <u>1톤</u> 의 화물을 1해리 운송	신규 선박의 건조단계에
할 때 <u>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u>	<u>서 해당 선박이 1톤</u>
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u>예상되는</u>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u>계산한</u>	이산화탄소 배출량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u>사전적으로 계산</u>
	한 것으로 새로이 건조한 선
	<u>박의 에너지효율</u>

<신 설>

<신 설>

<신 설>

-----.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해당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원수호를 때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존하는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 에서 해당 선박이 1톤의 화물 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사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연간에너지효 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 다.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
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

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호의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
-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4. 기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 사항
-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 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 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 록한 전자기록부 적합선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전자기록부의 기재사항, 적합선언서 발급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 수의 계산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 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 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 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 증확인서를 해당 <u>선박에</u> 비치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
수의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
지효율설계지수 값 및 허용값
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운항거리, 선박운항탄소집약도
<u>지수</u>
②・③ (현행과 같음)
4
<u>선박에 5년 이</u>
<u>상</u>

⑤·⑥ (생 략) <u><신 설></u>

- (5)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
 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
 박 중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
 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 1.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 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 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 한 개조
 -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 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 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

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개조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 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 에너지효율지수와 같거나 그보 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 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 수로 볼 수 있다.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 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 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 과를 제41조의4에 따라 해양수

<신 설>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 ③ (생 략) <신 설>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 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3에 따른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 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 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 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 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 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 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u>황산</u> <u>화물배출규제해역</u>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② (생 략)
- ③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기재하여야 한다.
- 1. <u>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u>을 항 해하는 경우
- 2. · 3. (생략)
- ④ (생 략)
-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일시 등 해양수산무령으로 성			
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			
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u>배출</u>			
규제해역			
<u>.</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u>배출규제해역</u>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⑤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 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u>황산</u> <u>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u> 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 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 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 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 저 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 (<u>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u>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배출
규제해역
⑥ 선박의 소유자는 제115조제
1항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사용 중인 연료
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
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 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세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
금지)
<u>배출규제해역</u>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2. (생략)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 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 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 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 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신 설>

1.・2.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u>제</u>
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이 유方기가) ① ~ ② (현해과

의 뉴요기간) 🛈 ~ 🛈 (연맹과 같음)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 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 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 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 조를 한 경우 해당 선박은 제5 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④ (생략)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저

- ① ② (생략)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 하여 수정・교체・개조・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1. (생략)

<신 설>

2. (생 략)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 ----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

	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
	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1]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3
	1. (현행과 같음)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

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조의6에 따른 선박운 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의2. (생략) <u><신 설></u>

<u>1</u>의3. (생 략) <신 설>

<u>1의4. · 1의5.</u> (생략)

<신 설>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세132조(과태료) ① ~ ③ (신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1의2. (현행과 같음)
- 1의3.제30조의2제2항에따른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선언서의 발급
- <u>1의4.</u>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값 및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 출
- 1의6. · 1의7. (현행 제1호의4 및 제1호의5와 같음)
- 1의8.제41조의4제5항에 따른선박연료유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제출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 ③ (생 제132조(과태료) ① ~ ③ (현행략) 과 같음)

4 -----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6의12. (생 략) <신 설>

7. ~ 18.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부 적합선언서 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 6의12. (현행과 같음)

6의13.제43조제4항의 규정을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기 아니한 자

7. ~ 18. (현행과 같음)